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꿀벌질병 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2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꿀벌질병 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3
2. 조문별 검토	11
가.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11
나. 꿀벌질병 조사사업 근거 마련	13
다. 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15
라. 꿀벌질병 민관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16
마. 꿀벌질병관리센터 지정·설치 근거 마련	19
IV . 입법의 재정영향	23
[참고자료]	2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8.
3. 회 부 일 : 2026.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채소·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육관리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특히 2021년 이후 겨울철 월동봉군 폐사가 급증하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과수·시설원에 분야의 수분 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예찰·진단·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질병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질병검사는 일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 역량과 진단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활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가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꿀벌질병 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꿀벌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 조사 및 예찰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꿀벌질병 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민관협력체계 및 표준진단체계 구축,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모니터링 체계 운영,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꿀벌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2. 질병 예방 및 방역 정책 3. 질병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예찰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3(꿀벌질병 조사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 조사 2. 매년 월동봉군 피해조사

현 행	개 정 안
	<u>3. 3년을 주기로 한 꿀벌질병 실태조사</u> <u>제18조의4(꿀벌질병 예찰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찰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기관 및 양봉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예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18조의5(꿀벌질병 검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검사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u> <u>1. 농림축산검역본부</u> <u>2.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기관</u> <u>3. 대학 및 연구기관</u> <u>4. 비영리법인</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u>③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6(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7(민관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18조의8(표준진단체계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도 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9(꿀벌질병 정보시스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10(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양봉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의11(꿀벌질병관리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꿀벌은 양봉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등 농작물의 수분을 매개하여 농업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등 양봉산업 외에도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꿀벌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꿀벌은 응애류,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

출되어 있으며, 이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꿀벌의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낭충봉아 부패병	175호 (3,721봉군)	128호 (5,665봉군)	87호 (2,473봉군)	30호 (610봉군)	25호 (594봉군)
부저병	29호 (2,208봉군)	52호 (3,968봉군)	62호 (3,251봉군)	31호 (839봉군)	17호 (396봉군)
계	204호 (5,929봉군)	180호 (9,633봉군)	149호 (5,724봉군)	61호 (1,449봉군)	42호 (990봉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질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
 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¹⁾.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꿀벌질병의 발생 및 피해 현황과 검사결과
 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에 활용하도
 록 함으로써, 질병 발생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질병의 조기 발
 견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꿀벌질병 관리체계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봉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할 필
 요가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이변 속 꿀벌 살리기’ 다부처 협력 성과 되짚는다” 보도자료, 2026.6.22.

현행 가축에 대한 질병 관리체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동 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의 예찰·검사, 병성감정,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꿀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율을 받는 가축²⁾으로,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은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그 밖의 꿀벌질병에 대해서도 동 법에 따른 병성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꿀벌 전염병 검사 대상 목록]

관리체계	구분 (종수)	질병	병원체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리대상	바이러스(1)	낭충봉아부패병	Sacbrood virus
	세균 (2)	미국부저병	Paenibacillus larvae
		유럽부저병	Melissococcus plutonius
그 외 국내에서 발생 관리 하는 질병	바이러스 (6)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Deformed wing virus
		급성벌마비증	Acute bee paralysis virus
		만성벌마비증	Chronic bee paralysis virus
		이스라엘급성마비증	Israeli acute paralysis virus
		카슈미르벌바이러스감염증	Kashimir bee virus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감염증	Black queen cell virus
	진균 (3)	석고병	Aspergillus spp.
		백목병	Ascosphaera apis
		노제마증	Nosema cerana, Nosema apis
	기생충 (5)	기문응애증	Acarapis woodi
		벼룩파리감염증	Apocephalus borealis
		바로아응애감염증	Varroa spp.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땃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시응애감염증	Tropilaelaps spp.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Aethina tumida Murray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개정안은 꿀벌질병의 조사·예찰, 검사기관 지정, 표준진단체계 구축, 질병정보 관리 및 조기경보 등 질병의 예방·진단 및 방역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관리체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현행 꿀벌질병 예방 및 관리체계 비교]

개 정 안		현 행 법 령	
조 문	주 요 내 용	근 거 조 문	주 요 내 용
제18조의2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양봉산업법」 제5조제1항, 제2항제7호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꿀벌 질병 방역대책·지원계획 포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3년마다 수립 시행
제18조의3	꿀벌질병 조사사업 (발생률·폐사율·원인, 월동봉군 피해 등)	「양봉산업법」 제6조제1항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18조의4	꿀벌질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1항, 제3항~제5항	가축방역관 배치 및 가축질병의 검사·예찰,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제18조의5	꿀벌질병 검사기관 지정 (검역본부·동물위생 시험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 제6항·제7항	국립·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병성감정 및 대학·민간연구소 등의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제18조의8	국가 표준 진단기준 마련 및 검사기관 정도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제7항, 제12조의2	병성감정 요령 고시,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제18조의9	꿀벌질병 정보의 수집· 분석·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 제1항~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상황 관리를 위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8조의10	질병 발생위험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3항~ 제5항	가축질병의 예찰을 위한 시료채취 및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예찰
제18조의11	꿀벌질병 예방 조사 연구 기술지원을 위한 꿀벌질병관리센터 지정 또는 설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12조· 제13조	가축방역관의 방역사무, 국립·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방역관을 통한 가축질병의 검사·예찰 및 시료채취, 국립·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병성감정과 대학·민간연구소 등의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병성감정 요령 및 실시기관의 관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질병정보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꿀벌질병에도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양봉산업법에 별도의 꿀벌질병 관리체계를 신설할 경우 동일한 질병관리 기능이 두 법률에 분산·중복될 수 있으므로,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기존 가축방역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꿀벌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부합하고, 가축전염병 대상 예찰(조사), 검사기관(병성감정 기관) 지정, 표준진단체계, 정보시스템 등 관련 사항이 이미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문 신설은 입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참고로, 꿀벌질병 관리체계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보완하려는 입법안도 발의되어 있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832호)은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및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질병에 대한 예찰·신고·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민간검사기관이 검사·병성감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정보의 수집·분석·공유 및 이동제한·소독·방제 등 방역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조문별 검토

가.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개정안 제18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꿀벌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질병 예방 및 방역정책, 질병 검사체계, 예찰 및 모니터링, 진단 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꿀벌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2. 질병 예방 및 방역 정책 3. 질병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예찰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질병 진단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꿀벌질병의 발생 양상과 방역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예방·방역, 검사·예찰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꿀벌질병 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질병 발생 현황 및 전망, 예방·방역정책, 검사·예찰 및 모니터링 등은 현행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꿀벌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종합계획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양봉산업법 제5조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꿀벌질병 조사사업 근거 마련

개정안 제18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꿀벌질병 발생률·폐사율 및 원인과 월동붕군 피해를 조사하고, 3년마다 꿀벌질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꿀벌질병 조사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 조사 2. 매년 월동붕군 피해조사 3. 3년을 주기로 한 꿀벌질병 실태조사

꿀벌질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규모와 폐사 현황 및 원인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질병 발생률·폐사율 및 원인과 월동붕군 피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질병 및 피해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꿀벌질병 조사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봉산업법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따라서 질병 발생률·폐사율 및 원인, 월동붕군 피해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사사항을 현행 실태조사에 추가하고 필요한 시기에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꿀벌질병 조사체계를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제18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농가의 꿀벌질병 검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비율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6(꿀벌질병 검사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꿀벌질병은 외관상 증상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체 및 응애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양봉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질병검사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에도 예 산사업³⁾을 통해 꿀벌질병 검사비용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0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및 내성응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검사비 4억 8,0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2억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또한, 검사비 지원은 꿀벌질병의 검사·진단을 전제로 하고 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꿀벌질병의 검사·진단체계와 분리하여 양봉산업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라. 꿀벌질병 민관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개정안 제18조의7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대학·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참고1] 참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7(민관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꿀벌질병은 다양한 병원체와 해충 등에 의해 발생하고 진단·방제 및 연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유관기관·학계 및 생산자단체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질병관리 및 검사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에도 현행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민관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정부·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학계·생산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꿀벌 질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도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과 함께 기존 협의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성(안)

-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학계, 생산자' 등 **20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 풀로 구성

구분	협의체 구성(안)
농식품부(4)	식량정책실장(위원장), 축산정책관(간사), 축산경영과장, 조류인플루엔자과장
유관기관(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연구부장,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립생태원 보전연구본부장
지자체(2)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
학계(8)	정00 교수(안동대 식물위학과), 김00 교수(한국농수산대 농수산융합학부), 김00 교수(경북대 생명과학부), 이00 교수(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권00 교수(인천대 생명과학부), 이00 교수(인천대 생명과학부), 윤00 소장(한국꿀벌질병연구소), 송00 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 등(8)	(사)한국양봉협회장,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이사 등

□ 운영 방법

- (기간) **2023. 5월 ~ 계속**(양봉산업 안정화 시 종료)
- (운영)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 사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 변경 가능

□ 주요역할 및 기능

- 양봉관련 기초DB 구축방안 등 산업관련 통계구축 논의
- 꿀벌 피해 등 상황 진단 및 대응방안 논의
 - 양봉 질병 및 병해충 발생 동향 파악(국내 양봉농가 예찰사항 및 해외 질병 모니터링 상황 공유)
 - 양봉피해 재발방지 대책 추진사항 점검
- 양봉산업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 논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마. 꿀벌질병관리센터 지정·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 제18조의11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질병의 예방·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11(꿀벌질병관리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질병의 예방,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꿀벌질병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꿀벌질병에 관한 조사·연구와 현장 기술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를 질병의 예방 및 현장 방역에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꿀벌질병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필요성은 현행 가축질병 방역조직의 운영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방역관이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예찰 및 시료채취 등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가축질병의 예찰,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조치 지도·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⑥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 2010. 7. 21., 2011. 6. 7., 2013. 3. 23.>	
<u>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u>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특히 가축질병방역센터는 특정 축종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질병 전반을 대상으로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관할지역별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⁴⁾, 꿀벌질병 역시 이러한 가축방역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꿀벌질병이 다른 가축질병과 비교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정도로 방역업무의 내용이나 수행체계가 구별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4) [참고 2] 참조

따라서 현행 가축질병방역센터와 별도로 꿀벌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u>2.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u>
3.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수출입식물의 검역
6. 국내식물의 검역
<u>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u>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u>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u>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경제성 분석
<u>6. 동물질병의 예찰·검색 및 조사</u>
<u>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u>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에 대한 인·허가 및 안전 관리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2.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동물검역과·역학조사과·질병진단과·위험평가과·동물약품관리과·동물약품평가과·축산물수출위생팀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⑩ (생 략)

⑪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⁵⁾

문 의 처
02)6788-5415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고 1

농식품부 꿀벌 질병관리 정책 및 예산지원 현황

□ 꿀벌 질병 방제약품 지원('26년 8,698백만원)

- 응애류·노제마증·낭충봉아부패병 방제약품 양봉농가 지원

* 꿀벌 질병 방역 관계자 협의회 결과('25.11.19.)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응애 내성성분 플루발리네이트 지속 제외('23.~) 및 아미트라즈 성분 방제제 추가 제외(추진 중)

** 연도별 예산 : ('12) 3,844백만원 → ('23) 8,672 → ('25) 8,663 → ('26) 8,698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26년 1,080백만원)('24년 ~)

- 농가 꿀벌 질병관리 컨설팅 및 질병·내성응애 검사 비용 지원(사업대상 150농가)

* 컨설팅비 : 600백만원(국비 180, 지방비 180, 자부담 240)

** 질병검사비 : 480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240)

◆ 질병검사 항목: 질병 17종 및 응애 내성검사 연 3회 이상하며, 필요 시 추가로 병성감정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를 실시

* (세균 2종)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바이러스 7종) 낭충봉아부패병, 날개불구바이러스감염증, 급성별마비증, 만성별마비증, 이스라엘급성마비증, 카슈미르별바이러스감염증,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감염증, (진균 3종) 석고병, 백목병, 노제마증, (기생충 5종) 기문응애증, 벼룩파리감염증, 바로아응애증, 가시응애감염증,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 양봉농가 대상 모니터링 사업 추진('25년 ~)

- 꿀벌 질병 능동 예찰 추진

- (검사건수) 약 1,000건(전국 약 100농가, 연 3회* 실시)

* 1회차 3~4월; 2회차 7~8월; 3회차 10~11월

* (검사항목) 질병(항원 14종), 응애감염량 및 플루발리네이트·아미트라즈 내성유전자

□ 꿀벌응애 집중방제 기간 운영

- 양봉 농가 대상으로 응애 적기 방제, 올바른 약품 사용, 내성 성분 합성화학제 사용 지양 등 지도·홍보

* 연 4회: 봄철관리(3~4월), 여름철(2회, 7-8월), 월동 전(11월)

** '26년 봄철(3.9.~4.6., 4주간) 집중방제 운영 결과: 홍보(SNS, 누리집 게시 등) 32,935건(203개 시·군), 교육 194회(2,846명 참여)

참고 2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4조제12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경기도(수원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오산시·화성시·광명시·평택시·광주시·안성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충청북도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	제주특별자치도